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761
------------	-----

2015. 12. 18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5. 10. 15. 박성숙 의원 발의, 2015. 10. 21. 회부

2. 제안이유

-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,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다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함.(안 제3조)
- 라.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)
- 마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사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
- 아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- 자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)
- 차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(안 제12조)
- 카.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 타 :

5. 검토의견

□ 배경 및 구성

- 이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2015년 10월 15일 박성숙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조례안의 구성은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(안 제5조)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(안 제6조)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

인 기준 적용범위 및 사업(안 제7조~제8조),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9조),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 등 총 1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.

□ 주요 내용

-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(이하, 범죄예방 디자인)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토록 하고,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, 건축위원회·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등에 적용토록 노력하며, 서울시가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이나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위원회 및 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것임.
-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은 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』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.
-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는 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』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키도록 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문화본부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안전총괄본부도 안전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(붙임1),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 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문화본부가 중점 수행해 온 반면, 건축위원회·도시계획위원회는 각각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국이 소관하고 있고, 이 조례안과 연동관계에 있는(제5조, 제9조) 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』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소관하고 있으므로, 이 조례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들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특히, 이 조례안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대상은 ‘건축물’과 ‘도시공간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‘건축물’은 주택건축국이, ‘도시공간’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주무부서로서 각각 관련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, 안 제5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과 안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는 관련된 기본계획과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5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은 『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』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』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각각 ‘건축물’과 ‘도시공간’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안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는 주택건축국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공간개선단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각각 ‘건축물’과 ‘도시공간’ 관련하여 심의·자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
-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을 하는 것은 지양하기 때문에 안 제13조(시행규칙)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,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근거규정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있으므로 건축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 - 또한, 안 제11조(사무의 위탁)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무를 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나, 문화본부가

범죄예방사업을 기시행 중이고 도시공간개선단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, 사무 위탁에 관한 사안을 지금 규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사료됨.

<붙임 1> 서울시 범죄예방 관련사업

범죄예방디자인사업

• 추진부서 :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

• 추진실적 및 계획

- 2012년(575,000 천원) - 마포구 염리동(기성시가지)
- 2013년(575,000 천원) - 중랑구 면목동(시장상권지역), 관악구 행운동(원룸밀집지역), 용산구 용산2가동 (외국인거주지역), 양재시민의숲 외 9개소(컨설팅)
- 2014년(1,168,500 천원) - 금천구 가산동(소공장 밀집지역)
- 2015년(2,254,000 천원) - 강북구 삼양동, 노원구 상계동, 동작구 노량진, 성북구 동선동2가, 양천구 신월3동, 광진구 중곡동, 중랑구·노원구·관악구 (자치단체자본보조, 주민참여예산)
- 2016년 계획(954,500 천원)

안전마을사업

• 추진부서 :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

• 추진실적 및 계획

- 2012년 - 지역단위 안전공동체 활동계기 마련(52개단체 171백만원 지원)
- 2013년 -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사업(9개구 53개소, 193백만원), 통합형 안전마을 사업 (2개소(동대문구 회기동, 서대문구 홍은1동), 560백만원)
- 2014년 -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(2개소(동대문구 회기동, 서대문구 홍은1동), 150백만원)
- 2015년 -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(1개소(관악구 난곡동), 120백만원)
- 2016년 계획 -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사업(3개소, 350백만원)